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짜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보도</b>	<b>2017. 4. 14.(금) 조간</b>	<b>배포</b>
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김상록 팀장(3145-8129),	최종천 수석조사역(3145-8156)
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## 제 목 : 비트코인 (Bitcoin)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!

[「3유·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」 이행과제]

### 1 배 경

□ 올해 들어 금감원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(☎ 1332)」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“비트코인”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\*

\* '17.1~3월중 20건, 116백만원

○ 저금리 전환대출, 신용등급 상향,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기존에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

□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

☞ 신종 대출사기 수법인 비트코인 편취 피해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

## 2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

■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,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

※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, 일부 거래소는 거래편의를 위해 시중 편의점에서도 판매

①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(피해자)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

-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라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

②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,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\*(선불카드와 동일)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

\* (page3) 비트코인 구매 영수증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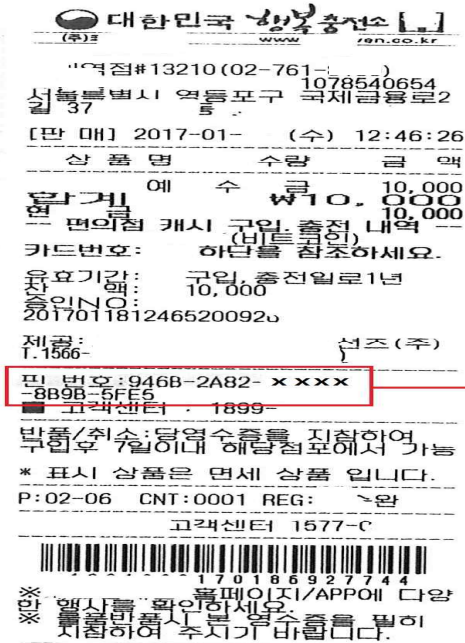
### < 대출 사기 흐름도 >



③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(PIN)\*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

\*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의 PIN번호가 기재

[ 비트코인 구매 영수증 (선불카드) ]



비트코인 선불카드 번호(핀번호 20개)  
XXXX - XXXX - XXXX - XXXX - XXXX

3 발생 원인

※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고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정보의 대상도 아니므로,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사용될 우려 상존

□ 대출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,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\*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,

\* 통장개설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, 미성년자 등 의심거래자에 대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

○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,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\*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

\* 누구나 손쉽게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, 영수증(선불카드)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해당 중개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구매하거나 현금화 가능

## 4 소비자 당부사항

- ① **(대출사기에 주의)**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
-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,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
- \* 소비자로부터 **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**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(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9조(벌칙))
- ② **(핀번호 노출에 유의)**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\*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
- \*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곧바로 현금화하는데 사용
- ③ **(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)**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『금융소비자 정보포털』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\*
- \*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“제도권 금융회사 조회/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” 메뉴에서 확인
- ④ **(적극적으로 신고)**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 「**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 1332)**」를 적극 활용
- 신고시 휴대폰 녹취, 사진,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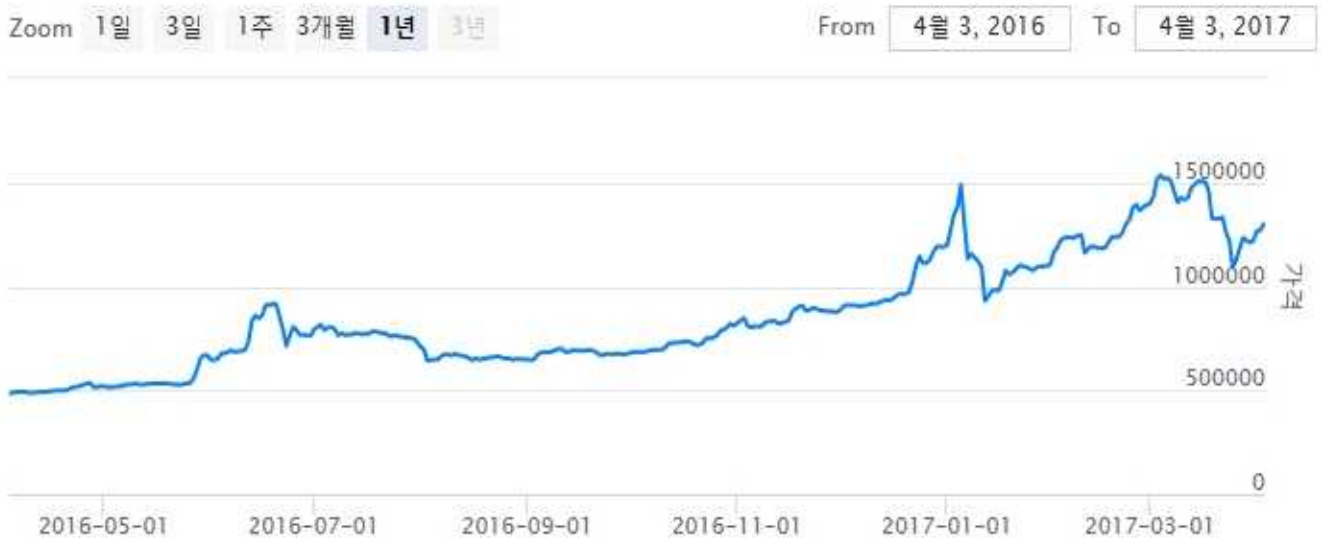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## 참고 비트코인 현황

- (개념) 사토시 나카모토(Satoshi Nakamoto)에 의해 '09.1월 개발된 가상화폐
  -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구매력이 저장되고 일정한 단위\*로 표시되고 발행기관이 없음

\* 1 BTC(비트코인) 가격 '17. 4. 3. 현재 1,342,793원

실시간 KOBIC(한국종합비트코인가격) 정보



- (거래소) 비트코인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곳\*으로 원, 달러, 유로, 위안, 엔 등 법정통화와의 교환비율이 정해짐

\* 우리나라에는 코빗([www.korbit.co.kr](http://www.korbit.co.kr))을 비롯하여 빗썸([www.bithumb.com](http://www.bithumb.com)) 등 다수의 거래소 존재하며, 해외에는 Coinbase(美), BTC China(中), bitcoin.de(獨), BTCBOX(日) 등이 있음

- (가맹점)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수취하는 사업체\*를 말함

\* Microsoft 등 글로벌기업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